

「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사업추진 일관성을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정책과정에 주민의사의 반영으로 예산낭비 억제, 배분의 공정성, 책임예산의 실현,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

3. 주요내용

-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 임기 개정(안 제11조제2항)
 - (현행) 연임할 수 없다. → (개정)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신설(안 제20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 임기 개정과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신설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해 보임.
-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참여예산학교가 해당부서 정책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, 주민들이 직접 원하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심의하여 관련 예산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